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 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 백혜련・양이원영・이인영

송영길 · 용혜인 · 김병욱

안규백 · 조오섭 · 전재수

황운하 · 양정숙 · 남인순

김승남 · 고영인 · 박 정

박영순 · 권인숙 · 윤관석

김철민 · 이원택 · 김경만

김회재 · 변재일 · 이낙연

임종성 · 전혜숙 · 맹성규

김승원 · 이탄희 · 이재정

박성준 의원(31명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급변하는 사회·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 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·정책적 판단 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.

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.

또한 정치·사회의 민주화 및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, 점차 그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.

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15조, 제16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같은 조 제3항 및 제10항 중 "19세"를 각각 "18세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·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전단 중 "19세"를 각각 "18세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	제15조(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)
①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	① <u>18세</u>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사람(「공직선거법」 제1	
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	
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	
16조에서 "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"	<u>1</u> 8ओ
이라 한다)은 시·도와 제175조	
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	
시에서는 <u>19세</u> 이상 주민 총수	<u>18세</u>
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	
이하, 시 \cdot 군 및 자치구에서는 1	<u>18</u>
<u>9세</u>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	<u>세</u>
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	
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	
정하는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 수	<u>18세</u>
이상의 연서(連署)로 해당 지방	
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	
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	
것을 청구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의 <u>19세</u> 이상	③ <u>18세</u>

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, 청구인의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·개정안 및 폐지안(이하 "주민청구조례안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한다.

④ ~ ⑨ (생 략)

① 제1항에 따른 <u>19세</u>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 민국내거소신고표, 외국인등록 표에 의하여 산정한다.

① (생략)

제16조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 기자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,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,

	<u>.</u>
(④ ~ ⑨ (현행과 같음)
(10 <u>18</u> 21
(① (현행과 같음)
제.	16조(주민의 감사청구) ①
	<u>18세</u>
	<u>18</u> 科

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 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 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-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"은 "감사를"로, "지방자치단체의장"은 "주무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"로 본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⑧ <u>18세</u>
<u>.</u>
 ⑨ <u>18세</u>
·
·
·
·
·
·